

임용결격사유

□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 ②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 ③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 ④ 다리·머리·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⑤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